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83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4

발 의 자: 윤준병 • 민형배 • 김철민

황운하 · 장철민 · 오영환

서영교 • 이용빈 • 윤재갑

이원택・이소영・박 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 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고 수리(受理)에 관하 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,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·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,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,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

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	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
및 관리의 의무) ① ~ ② (생	및 관리의 의무) ① ~ 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
	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
	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
	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3
	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
	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
	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
	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
	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
	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
	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
	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
	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
	<u>것으로 본다.</u>
<u>③</u> ~ <u>⑧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⑩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8
	항까지와 같음)